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7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 등(최수진의원안, 이해민의원안)	3

I. 개요

1.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6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8. 8.
- (3) 회 부 일 : 2024. 8.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연구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은 최대 45%까지 증가하고 있음.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도 2015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 판시한 바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만 늘어날 뿐 소득 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과 비과세 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분리과세 적용하고자 함. 또한, 제12조제3호어목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연 4,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개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한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 등(최수진의원안, 이해민 의원안)

현 행	최수진의원안	이해민의원안
☐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범위 (제20조 및 제21조) ☐ 직무발명보상금 - 재직 중 지급: <u>근로소득</u> - 퇴직 후 지급: 기타소득	☐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직무발명보상금 - 재직 중 지급: <u>기타소득</u> - 퇴직 후 지급: 기타소득	☐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직무발명보상금 - 재직 중 지급: <u>기타소득</u> - 퇴직 후 지급: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제12조)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 <u>연 700만원</u> 이하 비과세 (시행령)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폐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u>폐지</u>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u>연 4,000만원¹⁾</u> ※ 법률로 상향 규정
☐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조) ☐ 분리과세 대상 - <u>퇴직 후</u>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분리과세 한도: <u>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u>	☐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분리과세 대상 포함 ☐ 분리과세 대상 - <u>재직 중 또는 퇴직 후</u> 직무발명보상금 ☐ 분리과세 한도: (현행과 같음)	☐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분리과세 대상 포함 및 한도 상향 ☐ 분리과세 대상 - <u>재직 중 또는 퇴직 후</u> 직무발명보상금 ☐ 분리과세 한도: <u>폐지</u>

* 최수진의원안 2024. 7. 8. 제출(의안번호 1454), 이해민의원안 2024. 8. 8. 제출(의안번호 2670)

☐ 2건의 개정안은 재직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2016년 세

1)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한도 연 4,000만원으로 규정,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한도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 700만원) 유지

법개정 이전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분리과세 및 비과세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최수진의원안은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전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며,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안은 재직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전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분리과세 한도를 폐지하며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발명진흥법」 제15조·제16조²⁾ 등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³⁾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로써, 직무발명보상의 종류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출원유보보상 등이 있음.

2)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의 종류]

구 분	내 용
발명(제안) 보상	-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출원보상	- 종업원이 한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
등록보상	- 사용자가 승계 받은 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실시(실적) 보상	- 사용자가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 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차등 지급됨
처분보상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처분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
출원유보 보상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

자료: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http://www.kipa.org/ip-job/method/method04.jsp>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4)에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별도의 비과세 한도 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예규를 통하여 여러 유형의 직무발명보상금 중 “등록보상”에 한하여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왔음.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등록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출원·실시·출원유보보상 등은 과세대상으로 보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로

4) 「소득세법(법률 제13796호, 2016. 9. 1. 시행)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자가 받는 “실시보상”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⁵⁾, 이와 달리 대법원은 2015년에 해당 “실시보상”에 대하여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는 등⁶⁾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음.

이에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종전 기타소득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하여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과세 규정 적용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고, 보상금액이 적은 “등록·출원보상”과 달리 “실시보상”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규모가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금액을 연 300만원 이하로 정한 뒤 2020년 500만원, 2024년 7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였음.

5)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여 왔으며, 조세심판원도 조심2012전1728 심판청구에서 동일하게 판단하였음.

6)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갑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연혁 및 개정안과의 비교]

구 분	2016년 이전	2017년 ~ 2019년	2020년 ~ 2021년	2022년 이후	최수진의원안	이해민의원안
소득세법 소득분류	<u>기타소득</u>	재직 중 : <u>근로소득</u> 퇴직 후 : 기타소득			재직 중 : <u>기타소득</u> 퇴직 후 : 기타소득	
비과세	<u>한도 없음</u> (예규를 통해 등록보상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u>시행령 규정</u>			<u>한도 없음</u>	<u>법률 규정</u>
		한도(소득): <u>연 300만원</u>	한도(소득): <u>연 500만원</u>	한도(소득): <u>연 700만원</u>		한도: <u>연 4,000만원</u>
분리과세	적용 X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u>재직 중 또는</u>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한도(소득금액): <u>연 300만원</u>		한도(소득금액): 연 300만원	<u>한도 없음</u>

한편, 2016년 세법개정 이후 종업원등이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되어 유사한 기타소득 간 과세방식을 달리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른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는 재직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유능한 직무발명자에게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인센티브

를 부여함으로써 특허성과의 수준 제고 및 기술 이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22년도의 경우 과세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신고인원은 1,943명이었고, 총 금액은 567억 1,800만원으로 나타남.

[직무발명보상금 신고인원 및 금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인원	1,778명	1,446명	1,662명	1,970명	1,943명
신고금액	30,473백만원	28,805백만원	33,452백만원	41,058백만원	56,718백만원

자료: TASIC 국세통계포털 4-2-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Ⅱ

* 귀속연도·과세소득대상자 기준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1인당 직무발명보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시·처분 보상금의 경우 1인당 평균액수가 약 765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면 수령액 중 상당 부분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직무발명보상금의 유인효과가 상당 부분 제약될 수 있음.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또는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1인당 평균 직무발명보상금액]

구 분	발명신고·출원·등록 보상금	실시·처분보상금
기업 (최근 5년 평균)	62.9만원	206.1만원
2022년	50.9만원	62.9만원
2021년	37.6만원	530.5만원
2020년	45.1만원	167.6만원
2019년	33.3만원	76.3만원
2018년	147.6만원	193.2만원
대학·연구기관 (최근 5년 평균)	12.9만원	765.4만원
2022년	12.5만원	930.7만원
2021년	12.8만원	817.0만원
2020년	17.7만원	650.9만원
2019년	11.3만원	817.8만원
2018년	10.2만원	610.5만원

자료: 특허청, 「2019년도~2023년도 지식재산 활동조사」,

둘째, 기업의 기술 축적 및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한도 상향은 보상금을 지급 받은 종업원 등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유지, 장기 재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등의 기술개발 노하우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기업 등의 이윤 창출 및 연구성과 누적에 따른 또 다른 직무발명으로 이어져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특허청은 기업 내 우수·핵심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간접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의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일 수 있음.

먼저 직무발명보상금 자체가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보상금의 수령자는 대부분 기업의 연구원, 대학의 교원 등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따른 근로소득에 더한 가외적 소득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2년 직무발명보상금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인원 중 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비중이 67.4%에 달함⁷⁾.

둘째, 다른 비과세 급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과세 소득 중 저소득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승선·취재·벽지근무수당,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등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 수준이라는 점,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2017년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규정한 뒤 2020년 500만원, 2024년 7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왔다는

7) 2022년 기준 직무발명보상금 신고인원 1,943명 중 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1,340명에 달함(자료: Tasis 국세통계포털 4-2-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Ⅳ)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재직 중인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함.

최수진의원안에 따르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분리과세 규정을 둘 실익이 없고,

이해민의원안 역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과 같이 소득금액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54